부패행위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2015. 7.22 개정 2019.12.26 시행 2019.12.31 개정 2020.12.30 시행 2020.12.31 개정 2022.10. 7 시행 2022.10. 7 개정 2024.11. 7 시행 2024.11.11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부패행위·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6.> <개정 2020.12.30.> <개정 2022.10.7.>
 -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임직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 3. "부패행위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삭제 2022.10.7.>
 - 나. 공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다.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라. 공사 임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4. "협조자"란 부패행위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 5.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6.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7.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8.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9.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10. <삭제 2022.10.7.>
- 11.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사장의 책무) ①사장은 부패척결 의식 고취, 건전한 직업윤리 확립,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개정 2020.12.30.>
 - ②사장은 부패행위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한다. <개정 2019.12.26.> <개정 2020.12.30.>
 - ③사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개정 2020.12.30.>
 - ④사장은 부패행위와 공익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다. <신설 2020.12.30.>
- 제3조의2(교육) ①사장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②사장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 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임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임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시청각교육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의 경우 신규임용자나 승진자 등에 대해서는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0.7.]

-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의 공익침해행위 또는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사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임직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임직원을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 책임관 (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2에 따른 청탁금지 담당관이이를 겪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개정 2020.12.30.>
 - ②<삭제 2020.12.30>
 - ③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0.>
 - ④책임관은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12.30.>

제2장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개정 2020.12.30.>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 ④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 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신설 2022.10.7.>
- ⑤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5호 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7.>
- ⑥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2.10.7.>
-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 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

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 ②책임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 · 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감사·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 ③책임관은 신고내용을 감사·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동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을 준용 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 ④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공사의 감독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개정 2022.10.7.>

- ⑤<삭제 2022.10.7.>
- ⑥책임관은 감사·조사과정에서 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 ⑦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 또는 이첩·송부 등을 받은 날부 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9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 다. <신설 2022.10.7.>
- ⑧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

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22.10.7.>

- ⑨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신설 2022.10.7.>
 -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 2. 감사 · 조사 종류 후 처리 방향
 -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 측되는 경우 그 사실
 -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 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7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개정 2022.10.7.>
 -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 2. 제7조 제8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본조신설 2019.12.26.]

- 제8조(신고의 취하) ①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 ②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 된다고 파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의 종결) ①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 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7.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0.7.>
 - ②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7.>
-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개정 2022.10.7.>
 - 1. <삭제 2022.10.7.>
 - 2. <삭제 2022.10.7.>
 - 3. <삭제 2022.10.7.>

- 4. <삭제 2022.10.7.>
- 5. <삭제 2022.10.7.>
- 6. <삭제 2022.10.7.>
- 7. <삭제 2022.10.7.>
- 8. <삭제 2022.10.7.>
- 9. <삭제 2022.10.7.>
- 10. <삭제 2022.10.7.>
- ②임직원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 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7.>
- ③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책임관에게 해당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개정 2022.10.7.>
- ④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사장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 ⑤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 ⑥사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라도 신고자

에 대한 불이익 조치 또는 불이익 조치를 행할 우려 등을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조사의 종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관계 공직자 등에게 불이익 조치에 대한 임시적인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12.26.><개정 2022.10.7.>

⑦<삭제 2022.10.7.>

-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13조(신변보호 및 신고자보호) ①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 ②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2.10.7.>

- 1. 제10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 2. 제11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 3. 제11조제3항 및 제6항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 4. 제13조 제1항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 5. 제14조 제1항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본조 제목 개정 2022.10.7.]

-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있다.
 - ②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7.>
 - ③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 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 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2항에서 이동>
- 제15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사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 ② 삭제 <2019.12.26.>
- ③ 삭제 <2019.12.26.>
- ④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16조에서 이동 <2022.10.7.>]

제16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10.7.>]

- 제17조(징계 등) ①사장은 이 지침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개정 2022.10.7.>
 -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 3. 제11조제5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 4. 제11조제6항에 따른 사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 ②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4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

- 제18조(신고자 보상 등) ①사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사에 재산 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른 포상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 ②사장은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 ③<삭제 2022.10.7.>
 - ④<삭제 2022.10.7.>
 - ⑤사장은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및 협조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7.>
 - ⑥본조에 따른 포상금, 보조금, 구조금은 해당 예산이 편성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이 편성된 경우 사장은 지급사유, 신청 방법, 지급방법 등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0.7.>

- ⑦본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7.>
- ⑧본조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받을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액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7.>
- ⑨다만, 임직원이 자기 직무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1.7.>

[본조신설 2019.12.26.]

[종전의 제18조는 제24조로 이동 <2019.12.26.>]

- 제18조의2(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 (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사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0.7.]

제19조 <삭제 2022.10.7.>

제20조 <삭제 2022.10.7.>

제21조 <삭제 2022.10.7.>

제22조 <삭제 2022.10.7.>

제23조 <삭제 2022.10.7.>

제24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 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9.12.26.>]

제25조 <삭제 2020.12.30.>

제5장 공익신고의 접수 <신설 2020.12.30.>

제26조 <삭제 2022.10.7.>

- 제27조(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공익신고 상담)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 또는 민원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 ②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③전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본조 제목개정 2022.10.7.]

- 제28조(공익신고의 접수) 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 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 ②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0.]

- 제29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②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

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30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및 협조사항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개정 2024.11.7.>

②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개정 2022.10.7.>

[본조신설 2020.12.30.]

제31조(대표자 선정 등) 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7.>

②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위임 장, 공익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 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7.>

- 1. 공익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2. <삭제 2024.11.7.>
- 3. 변호사
-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본조신설 2020.12.30.]

제32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0.]

- 제33조(보완의 요구) ①책임관은 제28조, 제29조에 따른 신고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3. 공익침해행위 내용
 -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 ②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③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본조신설 2020.12.30.]

- 제34조(신고의 취소) ①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 로 처리할 수 있다.
 - ②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0.]

- 제35조(공익신고기록) 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 11호 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 여 관리한다. <개정 2022.10.7.>
 - ②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 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 ④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제1 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 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 ⑤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6장 공익신고의 처리<신설 2020.12.30.>

- 제36조(공익신고의 조사) ①사장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책임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 ②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9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10.7.>
- ③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및 협조사항 안내문을 첨부한다. <개정 2022.10.7.><개정 2024.11.7.>
- ④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2.10.7.>
 -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경위와 이유
 - 2. 조사·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
 -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⑤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 ⑥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동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개정 2024.11.7.>
- ⑦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제 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7.>
- ⑧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37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공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익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및 협조사항 안내문을 첨부한다. <개정 2024.11.7.>

②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0.]

제38조(공익신고의 종결) ①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36조 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공익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

나 이미 끝난 경우

-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 제39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공익신고자가 제36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38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2.10.7.><개정 2024.11.7.>
 - ②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7.><개정 2024.11.7.>
 - ③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본조신설 2020.12.30.]

제7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신설 2020.12.30.>

제40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임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

- 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근무처 등 인적사항
 -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 ②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③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개정 2022.10.7.>

[본조신설 2020.12.30.]

- 제4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임직원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아니 된다. <개정 2022.10.7.>
 - ②임직원은 소속 임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7.> ③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 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본조신설 2020.12.30.]

- 제42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사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소속 임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 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 ②사장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소속 임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본조신설 2020.12.30.]

제43조(신변보호 안내)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 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 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본조신설 2020.12.30.]

- 제44조(징계의 감면) ①사장은 임직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인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 ②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임직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7.>

③임직원의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 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0.7.>

[본조신설 2020.12.30.]

제45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사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②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본조신설 2020.12.30.]

제46조(공익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에 따른「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 2. 제40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 3. 제43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 요한 경우
- 4. 제45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 5. 제41조 제2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 6. 제42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고려가 필요한 경우
- 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 한 경우

[본조신설 2020.12.30.]

제4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책임관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제2조 제11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0.7.><개정 2022.12.><개정 2024.11.

-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 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7.><개정 2024.11.7.>
 - 1.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 2.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본조신설 2020.12.30.]

제4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 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수 있다. <개정 2022.10.7.><개정 2024.11.7.>

-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 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본조신설 2020.12.30.]

제49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 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 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 1. 육체적 ·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본조신설 2020.12.30.]

제50조(협조 등의 요청) 공사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0.]

제8장 보칙<신설 2020.12.30.>

- 제51조(다른 법률·지침과의 관계) ①부패행위 또는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령 및 공익신고자보호법령에 따른다.
 - ②부패행위 또는 공익신고 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 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 ③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부패행위 또는 공익신고자 등에게 유

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90조의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0.]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6.>

이 지침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30.>

이 지침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7.>

이 지침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7.>

이 지침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이동 2022.10.7.>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이름			주민등				
신고자	주소							
	연락처			소속				
	이름							
피신고자	소속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	경우 기재	연락 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신고 취지 및								
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별첨기능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신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기관: 신고일: 조치결과:)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위와 같이 피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성명			-	민등록번호 국인등록번호)	
신고자	주소				, ,	
	연락처					
Hallia	제목					
부패신고	접수일	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있습니다 ⇒ [2. 수사기 귀하의 절차를 동의하셔	귀하의 구. 이 5] 동5 관의 수 신고사 거칠 수	신고사건에 대하여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 의 [] 부동의 사과정 건이 수사기관에 고털	분을 밝혀 발되거나	거나 암시하는 검찰에 송치되여	하는 절차를 거칠 수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하거나 암시하는 것에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하

부 패 신 고 (공 익 신 고)접 수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접수 일자	제목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처리결과 (조사·수사, 타기관 이송, 종결)	비고
2022 -					

(별지 제4호 서식)

접 수 증

접수번호 20 부패(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월일접수담당(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접 수 증

접수번호 20 부패(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월일접수담당(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이동 2022.10.7.>

<u>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u>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김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포상금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구조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 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이 위원 회에 신청)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 내〉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 국번 없이 1398, 110)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 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기관 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를 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신고 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법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 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패신고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권익위 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공공기관 수입의 4~3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22.10.7.>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중원기기	추천기관명								
추천기관	소관부서		(전화번	ই)					
	성 명		건 등록 1 1호						
	주 소								
77.1-7	연 락 처								
포상금 지급대상자	소 속								
	직업(직위)								
	[] 내	부 신고자		[] 외부 신고	자				
	[] 포싱	금 지급대상자로 추천	함을 사전에 일	알리고 동의를 구	<i>'</i> 함.				
추천사유									
	신고 접수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T 117471	신고내용								
조사결과	조사수사기관		결과 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에 의한 보상금 및 포	청구여부	[] 있음 [] 없음)				
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수령여부	[] 있음 [] 없음	(금액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제1항에 따른	른 포상금 지				
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	니 다.							
			20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및 협조사항 안내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권익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사용자 등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를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에 원상회복이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와 관련한 형사,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 권익위 의무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 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권익위 재량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권익위 의무 지급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 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보호제도 안내 또는 보상·포상제도 안내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 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 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 기관 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 금품·근로관계상 특혜 요구와 같은 부정한 목적 신고는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 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 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공익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법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 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익신고나 보호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 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국가·지자체 수입의 4~2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수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사·수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등 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됩니다.(법 제12조 제1항)
-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 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법 제11조 제1항)
- ※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 촬영),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2. 피신고자 및 신고내용 비공개

○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공익신고 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에서 이동 2022.10.7.>

대표신고자 선정서

대표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2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등 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하

	선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작성방법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이동 2022.10.7.>

20	년	월	일	접수	
20)	공익 저		호	

접수자	센터장

공 익 신 고 기 록

신고제	목									
담당부	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	성명					Щ	신고자성	성명		
	조	사종료일	20	년	월	일	내	용		
	0	송 일	20	년	월	일	0 {	송기관		
처 리	<i>결</i> .	결과통보일		년	월	일		상자 상기관)		
신분공개		조사기관		수	사기곤	<u>ł</u>			C+C+	MICITA
동의여부									담당	센터장
종 결 일	20				종	결확인				
보존기간		년 (20 까지)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에서 이동 2022.10.7.>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제목				
처리결과				
결과통보일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신고자	주 소			
	연락처			
이의신청 이 유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에서 이동 2022.10.7.> <개정 2024.11.7.>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접수번호		처리기?	<u>가</u>		90일	<u> </u>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내부 공익신고	자		[] 외부 공	익신고자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 [] 없음	(기관명	:)
		수령여부		[] 있음 [] 없음	(금액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⑥ 추천인 : 직위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31조제2항에 따라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으면 []에 ✔를 표시합니다.
-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